

3.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

원심은,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실패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, 피고가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대비한 손실보전책의 확보는 근본적으로 원고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부담인 점,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주단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및 보조사업자인 원고 등의 지도감독 소홀과 미숙한 대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도 하지 못한 채 그 대부분의 세대가 일반인에게 무단임대된 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, 이에 따라 위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적지 않은 국고손실이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사업

의 보조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전액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이미 이행된 보조사업 부분에 투입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까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,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

4. 대법원 2005.11.10. 선고 2004다55858 판결 [부당이득금]

판결요지

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